#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8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김홍걸·강병원·기동민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박영순 · 송갑석 · 이규민

이용빈 · 이정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COVID-19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근로자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이 2 020년 12월 31이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불황으로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으로 전 환하거나 사회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 자 전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 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4제3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9년"을 "2020년"으로, "2020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30조의4제3항 중 "2020년"을 각각 "2021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
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	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견기업이 <u>2019년</u> 6월 30	<u>2020년</u>
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	
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u>202</u>	<u>2</u>
<u>0년</u>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	<u>021년</u>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③ (생 략)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② (생 략)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 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 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	
으 )	
③	
<u>2021년</u>	
<u>2021년</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 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 ⑥ (생 략)

·
♠ (청체기 가 ○)
④ ~ ⑥ (현행과 같음)